

사슴 자가도축 문제, 타결될 전망

- 농장내 자가도축 및 판매 가능할 듯 -

올해부터 사슴도 정식 도축장을 이용, 도축을 시행해야 한다는 농림부의 강력한 의지가 분회 및 양록농가의 강한 반발이 지속되자 현실성있는 법 개정을 통해 농가 편의가 반영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회가 대안으로 내세웠던 농장내 간편도축 시설 설치없이도 자유롭게 도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시설 마련을 위한 경제적 부담도 덜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농림부는 최근 입법 예고를 통해 법 제 7조 3호의 자가소비 도살·처리 규정을 개정, ‘자가소비에 사용하거나 생산자의 소유지에서 소비자에게 해당 장소에서 직접 조리·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를 자가도살 허용토록 했다. 또 동 법 시행규칙 제 4조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토록 했다.

이는 농장내에서 본인은 물론, 소비자가 먹을 수 있도록 사슴을 자유롭게 도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도축한 사슴을 중탕화하여 농장을 방문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소비자의 농장방문에 의한 양록산물 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사슴 농가들은 별다른 어려움없이 합법적으

로 자가도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중탕가 공품의 유통, 혹은 진열 판매를 위해 도살하는 경우에는 정식 도축장에서 도축한 원료를 사용해야만 한다.

즉, 농장을 방문한 소비자에게 중탕가 공품 판매를 위해 사슴을 도축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비자 방문이 아닌 중탕가공품만의 유통을 위해서는 정식 도축장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분회 관계자는 “자가 중탕가 공품을 자유롭게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나아가 양록산물 가공산업 확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자가도축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의 입법 예고가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에 대해 분회 김수근 회장은 “농장내에서 자유로운 자가도축이 가능해지더라도 농가 스스로 청결한 도살 및 안전한 폐수 처리를 실시하는 등 위생문제를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슴농장의 자가도축이 위생적으로 불결하다는 지적이 소비자들로부터 빈번하면 또다시 규제성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양록**